

2024년 보육사업의 변화된 내용을  
한번에 알아보는 어린이집 운영 안내

# 경기도와 보육 바로 알기





## 들어가며

---

본 자료는 매년 변화된 지침과 새로운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기가 어려운 어린이집에 운영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지원하고자 시작되어 세 번째 발간되었습니다.

2024년 보육사업안내, 경기도보육사업안내 등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운영에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법적 근거에 맞는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 보육체계 개편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 개정 등 많은 변화 속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한 번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환경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영유아가 질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의 고민을 살피며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보육현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정혜원

# CONTENTS

<b>I</b>	<b>어린이집 기본운영</b> .....	<b>05</b>
	1. 보육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06
	2.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09
	3. 꼭 기억해요	16
	4. 궁금해요	26
<b>II</b>	<b>재무회계</b> .....	<b>29</b>
	1. 주요 변경사항	30
	2. 꼭 기억해요	38
	3.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42
	4.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44
<b>III</b>	<b>어린이집 CCTV설치·운영</b> .....	<b>49</b>
	1. 주요 변경사항	50
	2. 궁금해요	51
	3. 꼭 기억해요	52
<b>IV</b>	<b>급식·위생·안전</b> .....	<b>53</b>
	1. 주요 변경사항	54
	2. 꼭 기억해요	56
<b>V</b>	<b>보육교직원 관리</b> .....	<b>59</b>
	1. 주요 변경사항	60
	2. 꼭 기억해요	67
	3.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69
<b>VI</b>	<b>기타</b> .....	<b>73</b>
	1. 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	74
	2. 대체교사지원사업 안내	77
	3. 경기도 특색사업 안내	80
	4. 주요 보육 통계	83

# I

## 어린이집 기본운영

1. 보육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2.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3. 꼭 기억해요
4. 궁금해요

# 보육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 보육사업안내

▶ 2024년 보육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중 **어린이집 기본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 68~71p

#### 다. 입소 및 퇴소

-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2.9.시행)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10.19.]

-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2.9. 시행)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2024. 2. 9.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손자녀와 दा자녀(2명 이상)가구에 대해 입소 1순위가 적용됩니다. 2순위에 대한 지침 내용도 명확화되어 변경되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소 및 퇴소** | 입소 우선순위 확인 서류 |

순위	구분	확인 서류	제출구분
1순위	자영업자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장 매출 장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li> </ul>	중 1부 필수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 원칙**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 불가
  -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 생략 >

자영업자 인정 기준 명확화되었으며, 확인 서류는 최근 3개월 이상을 확인합니다.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적용 원칙에서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 불가라는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소 및 퇴소**  
6) 퇴소

- 부모 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입소월에는 부모보육료 중 정산된 금액이 부모에게 사후 지급되어야 하므로 어린이집 재원중인 0~1세(0~23개월)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어린이집으로 퇴소를 신청하여야 함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부모보육료 중 정산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0~1세(0~23개월)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어린이집으로 퇴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제출 대상 (평가 결과 A, B등급)	평가결과 통보 시기가 1~6월인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 시기가 7~12월인 어린이집
보고서 제출 시기	5.1.~5.31.	11.1.~11.30.

※ 보고서 제출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 지역사회와 연계 후속조치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는 상반기(5.1.~5.31.)와 하반기(11.1.~11.30.)로 나눠서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제 개편에 따라 확인점검 폐지 예정이므로,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부록12)**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사용자**  
**관리지침**  
 부록290p

③ 사용자 가입 및 승인 절차

6. 권한 변경 및 탈퇴

\* 가입신청 후 1개월 이내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신규 가입신청 정보는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됨

- 어린이집 폐원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해당 어린이집의 모든 사용자의 권한은 자동으로 일괄 회수됨

\* 단,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처리 등 폐원 관련 행정처리 필요 시 대표자 권한에 한해서만 권한을 재부여할 수 있으며 행정처리가 모두 완료된 즉시, 지자체에서는 대표자 권한을 회수해야 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지침에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입신청 후 1개월 이내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신규 정보는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며, 어린이집 폐원 시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모든 사용자의 권한은 자동으로 일괄 회수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2

## ▶ 정책 비전 및 목표

- (정책 비전)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경기 보육”

비전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경기 보육			
정책목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현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및 역량강화	모든 양육자의 육아역량 강화	공공보육 기반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

## ▶ 기본방향

-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현
  -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제도 개선
  - 보육교직원과 양육자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
  - 영유아 체험공간, 신기술 보육콘텐츠 체험 지원 등 영유아의 놀 권리 확보
  
- ▶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및 역량강화
  - 교직원의 휴게, 휴가 등 노동권리 확보를 위해 보조, 대체교사 등 지원 강화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창구 운영 내실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체계 강화
  -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
  
- ▶ 모든 양육자의 육아역량 강화
  - 찾아가는 놀이교재교구 배달,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등 양육서비스 강화
  - 발달지연, 경계선상 영유아, 취약보육 이용 영유아 대상 발달지원사업 내실화
  - 부모급여 및 차액보육료 지원 확대 등 육아비용 지원 강화

- ▶ 공공보육 기반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
  -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보육 기반 확대 지속**
  - 공공보육 확대와 동시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장애아, 외국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보육 정책 강화**
  - 보육정책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계 기능보강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3년	2024년	변경 사유																								
<b>1. 양육자의 보육부담 경감 및 수요중심 보육서비스 확대</b>																											
<b>• 시간제보육 지원(국·도비)</b>																											
사업 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 시간제보육이 필요한 6~35개월 미만 양육수당 지급 영아</li> <li>•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운영비 지원조건</li> <li>- 100%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 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중 2개 조건 충족 시</li> <li>- 70%지원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 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 중 2개 조건 충족 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 시간보육이 필요한양육수당수급영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반) 6~36개월 미만 영아</li> <li>- (통합반) 6개월~2세반 영아</li> </ul> </li> <li>•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지원 조건</li> <li>- 월 평균 이용시간 40시간 이상 : 100% 지원</li> <li>- 월 평균 이용시간 40시간 미만 : 미지원</li> <li>※ 운영비 지원 조건</li> <li>- 월 평균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 100% 지원</li> <li>- 월 평균 이용시간 4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 전월 실적(80시간 이상) 충족 시 지원</li> <li>- 월 평균 이용시간 40시간 미만 : 미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반 추가</li> <li>- 인건비 및 운영비 차등지원 실적 기준 변경</li> </ul>																								
<b>•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b>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li> <li>-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월 2,099,100원/인</li> <li>-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월 467천 원/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li> <li>-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월 2,172,600원/인</li> <li>-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월 475,000원/인</li> </ul>	지원단가 인상																								
지원 내용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단가</th> <th>세부 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td> <td>2,172,600원 /인</td> <td>(생략)</td> </tr> <tr> <td>아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td> <td>475,000원 /인</td> <td>(생략)</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단가	세부 사항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2,172,600원 /인	(생략)	아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475,000원 /인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단가</th> <th>세부 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td> <td>2,172,600원 /인</td> <td>(생략)</td> </tr> <tr> <td>아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td> <td>475,000원 /인</td> <td>(생략)</td> </tr> <tr> <td>모니터링 활동비</td> <td>연 50천원/개소</td> <td>(생략)</td> </tr> <tr> <td>놀이반장 공동체 운영</td> <td>연 3,450천원/개소</td> <td>(생략)</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단가	세부 사항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2,172,600원 /인	(생략)	아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475,000원 /인	(생략)	모니터링 활동비	연 50천원/개소	(생략)	놀이반장 공동체 운영	연 3,450천원/개소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단가 인상</li> <li>- 모니터링 활동비 및 놀이반장 공동체 운영 신설</li> </ul>
구분	지원단가	세부 사항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2,172,600원 /인	(생략)																									
아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475,000원 /인	(생략)																									
구분	지원단가	세부 사항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2,172,600원 /인	(생략)																									
아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475,000원 /인	(생략)																									
모니터링 활동비	연 50천원/개소	(생략)																									
놀이반장 공동체 운영	연 3,450천원/개소	(생략)																									
<b>•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도비)</b>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li> <li>•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기사 인건비 : (전문) 월 150만원</li> <li>- 교재교구비 : (전문) 연 200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li> <li>•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기사 인건비 : (전문) 월 150만원</li> <li>- 교재교구비 : (전문) 연 400만원</li> <li>(통합) 연 200만원 &lt;신규&gt;</li> </ul> </li> </ul>	교재교구비 지원 확대																								

구분	2023년	2024년	변경 사유
사업 추진 안내	나. 지원요건 • 운전기사 인건비 - 생략 • <신설>  다. 지급기준 • 공통사항 - 생략 • 운전기사 인건비 지급기준 - 생략 • <신설>	나. 지원요건 • 운전기사 인건비 - 생략 • 교재교구비 -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23년 1월 기준 장애아반 3개 이상(일반장애아반+누리장 애반, 장애아방과후반 제외) 운영하는 시설  다. 지급기준 • 공통사항 - 생략 • 운전기사 인건비 지급기준 - 생략 • <b>교재교구비</b>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연 400만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연 200만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기준 명확화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도비)

사업 개요	• 지원내용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포함) 별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개소당 1명 월 2,815천원/ 인 • 지원단가 - 인건비(월 2,120천원), 사용자부담금(395천원), 수당(월 300천원)	• 지원내용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포함) 별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u>개소당 1명 월 2,877천원/ 인</u> • 지원단가 - <u>인건비(월 2,173천원), 사용자부담금(404천원), 수당(월 300천원)</u>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지원단가 변경
-------	---	---	---------------------

2. 보육서비스의 질 및 보육 신뢰도 제고

•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 '24년 신규사업

사업 개요	• <신설>	• 사업개요 -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 시설 - 사업량 : 5개소(남부 3개소, 북부 2개소 예정) - 지원내용 ◦ 보육교사 인건비(개소당3명, 월2,692천원) : 282,660천원 ◦ 휴일 및 야간근무 수당 : 49,500천원 ◦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비(월 300천원) : 10,500천원	신규사업
-------	--------	--	------

구분	2023년	2024년	변경 사유
<b>3.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b>			
<b>• 공공형어린이집 안심보육사업(도비) ※ '24년 신규사업</b>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 공공형어린이집</li> <li>- 사업량 : 100개반</li> <li>- 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180/ 시·군비 420)</li> <li>- 지원액 : 각 반당 60만원</li> <li>- 사업내용 : 유아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 필요한 운영비 지원</li> </ul> </li> </ul>	신규사업
<b>•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도비)</b>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 국공립어린이집</li> <li>- 사업량 : 60~75개소(300~375대)</li> <li>- 사업비 : 750백만원(도비 225/ 시·군비 525)</li> <li>- 사업내용 : 창문형 공기순환(정화)장치 설치 지원</li> <li>- 지원기준 :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실당 1대 설치비 지원</li> <li>* 공기순환(정화)장치 운영 관련 기타필요비용은 어린이집 자부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 경기도 내 어린이집</li> <li>- 사업량 : 133개소(665대)</li> <li>- 사업비 : 1,663백만원(도비 500/ 시·군비 1,163)</li> <li>- 사업내용 : 창문형 공기순환(정화)장치 설치 지원</li> <li>- 지원기준 :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실당 1대 설치비 지원</li> <li>* 공기순환(정화)장치 운영 관련 기타필요비용은 어린이집 자부담</li> </ul> </li> </ul>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대상 확대 ※ 430㎡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 의무 시행
<b>•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도비)</b>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 238개소</li> <li>- 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180/ 시·군비 420)</li> </ul> </li> <li>〈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 420개소</li> <li>- 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700)</li> </ul> </li> <li>'23년 사업 대비 변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담금 : 자부담금(50%이상) ⇒ <b>자부담금(50%이상), 예외사항 추가(30%이상)</b></li> <li>- 지원금액 : 안전취약시설 개선 및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일 경우 추가 지원(1백만원)</li> </ul> </li> </ul>	- 사업량 확대 - 지원내용 변동
<b>•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b>			
사업 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li> <li>- 운영비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li> </ul> </li> <li>〈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비 :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li> <li>- 운영비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li> <li>- <b>운영비(0~2세) : 40인 미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아</b></li> </ul> </li> </ul>	운영비 (0~2세) 지원 신설

구분	2023년	2024년	변경 사유
----	-------	-------	-------

•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도비)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 :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li> <li>※ 지원제외대상</li> <li>- 조리원 인건비 지원시설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법인 단체 등·직장*, 공공형, 0세아전용 어린이집 등</li> <li>*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li> <li>- 평가인증 취소 또는 평가제 D등급 어린이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 :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li> <li>※ 지원제외대상</li> <li>- 조리원 인건비 지원시설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법인 단체 등·직장*, 공공형, 0세아전용 어린이집 등</li> <li>*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li> <li>- 평가인증 취소 또는 평가제 D등급 어린이집</li> <li>* 신규, 인증종료(대표자변경 등), 인증유효기간만료 시설 지원대상 포함</li> </ul>	지원제외 대상 명확화
-------	--	--	-------------

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권익보호 지원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도비)

사업 개요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급형 대체교사*(단, 관리자는 인력풀 관리 시 지원**)</li> <li>* 경기도 대체인력 인력풀에 포함된 일급형 대체인력은 지원기준 적합시 지원 가능 &lt;신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급형 대체교사*(단, 관리자는 인력풀 관리 시 지원**)</li> <li>* 일급형 대체인력은 경기도 대체인력 인력풀을 통해 신청되어, 인력풀에 보조금 정산 실적 이 지원기준 적합 시 지원가능</li> <li>- 언제나 어린이집 보육교사</li> </ul>	지원대상 명확화 및 추가												
사업 개요 (지원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누리과정담당보육(특수)교사</td> <td>월110천원/인</td> </tr> <tr> <td>월급형대체교사</td> <td>월120천원/인 (단, 파견일수 17일 미만시 30천원 차감*)</td> </tr> </tbody> </table> <신설>	구 분	지원액	누리과정담당보육(특수)교사	월110천원/인	월급형대체교사	월120천원/인 (단, 파견일수 17일 미만시 30천원 차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누리과정담당보육(특수)교사*</td> <td>월110천원/인</td> </tr> <tr> <td>월급형대체교사</td> <td>월120천원/인 (단, 파견일수 17일 미만시 30천원 차감*)</td> </tr> </tbody> </table> * 영유아혼합반의 경우, 영아반 기준으로 지급	구 분	지원액	누리과정담당보육(특수)교사*	월110천원/인	월급형대체교사	월120천원/인 (단, 파견일수 17일 미만시 30천원 차감*)	차등지원 폐지 지원내용 명확화
구 분	지원액														
누리과정담당보육(특수)교사	월110천원/인														
월급형대체교사	월120천원/인 (단, 파견일수 17일 미만시 30천원 차감*)														
구 분	지원액														
누리과정담당보육(특수)교사*	월110천원/인														
월급형대체교사	월120천원/인 (단, 파견일수 17일 미만시 30천원 차감*)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도비)

사업 개요 (지원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급형 대체교사</td> <td>정부지원 월80천원/인 정부미지원 월30천원/인</td> </tr> <tr> <td>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td> <td>월90천원/인</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액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급형 대체교사	정부지원 월80천원/인 정부미지원 월30천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90천원/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반담당 보육(특수)교사</td> <td>정부지원 월80천원/인 정부미지원 월30천원/인</td> </tr> <tr> <td>월급형 대체교사</td> <td>월80천원/인</td> </tr> <tr> <td>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td> <td>월90천원/인</td> </tr> </tbody> </table> * 영유아혼합반의 경우, 영아반 기준으로 지급	구 분	지원액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정부지원 월80천원/인 정부미지원 월30천원/인	월급형 대체교사	월80천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90천원/인	지원내용 명확화
	구 분	지원액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급형 대체교사	정부지원 월80천원/인 정부미지원 월30천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90천원/인																
구 분	지원액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정부지원 월80천원/인 정부미지원 월30천원/인																
월급형 대체교사	월80천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90천원/인																

•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도비)

사업 개요 (지원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액</th> <th>대 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영아전문교사</td> <td>월50천원/인</td> <td rowspan="2">                             • 영아반 담당교사                              ※ 일시보육(0,2세) 포함                              &lt;신 설&gt;                         </td> </tr> <tr> <td>월30천원/인</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액	대 상	영아전문교사	월50천원/인	• 영아반 담당교사 ※ 일시보육(0,2세) 포함 <신 설>	월30천원/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액</th> <th>대 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영아전문교사</td> <td>월50천원/인</td> <td rowspan="2">                             • 영아반 담당교사                              ※ 시간제보육(독립반) 포함                              ※ 영유아혼합반 담당교사 제외                         </td> </tr> <tr> <td>월30천원/인</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액	대 상	영아전문교사	월50천원/인	• 영아반 담당교사 ※ 시간제보육(독립반) 포함 ※ 영유아혼합반 담당교사 제외	월30천원/인	지원내용 명확화
	구 분	지원액	대 상														
영아전문교사	월50천원/인	• 영아반 담당교사 ※ 일시보육(0,2세) 포함 <신 설>															
	월30천원/인																
구 분	지원액	대 상															
영아전문교사	월50천원/인	• 영아반 담당교사 ※ 시간제보육(독립반) 포함 ※ 영유아혼합반 담당교사 제외															
	월30천원/인																

구분	2023년	2024년	변경 사유
----	-------	-------	-------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비)

사업 추진 안내 (지원 사유 및 지원 일수)	경기도 자체기준	병가	5일 이상 입원	경기도 자체기준	병가(유급)	5일 이상 입원 (해당 입원사유로 인한 통원 치료 기간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명확화					
	- 보육교사 : 일 91,410원/인(실제 근무일 기준 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2023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 체교사 지원단가 적용(변동시 동일적용)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연장보육 전담교사 4 시간)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11,430원)으로 지급 가능 ※ (생략) - 조리원 : 일 77,000원/인(실제 근무일 기준으 로 지원,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9,630원)으로 지급 가능, 기존 조리원의 근무시간을 준용 하되, 불가피한 경우 추가근무가능(단, 최대 8시간) ※ (생략) ◦ 지원액		- 보육교사 : 일 93,690원/인(실제 근무일 기 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2024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 체교사 지원단가 적용(변동시 동일적용)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연장보육 전담교사 4 시간)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11,720원)으로 지급 가능 ※ (생략) - 조리원 : 일 79,000원/인(실제 근무일 기준 으로 지원,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9,860원)으로 지급 가능, 기존 조리원의 근무시간을 준용 하되, 불가피한 경우 추가근무가능(단, 최대 8시간) ※ (생략) ◦ 지원액									
지원 기준 (지원 단가)	인원	1~10명	11~20명	21~30명	31~40명	40명이상						
	운영비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인원 (명)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 이상	
	운영비 (백만원)	2	2.5	3	3.5	4	4.5	5	5.5	6	6.5	
	◦ 집행기준 : 대체교사의 교통비 및 제수당으로 50%이상 지원, 그 외 사업추진(월급형 및 일 급형 인력풀 관련 포함)에 필요한 운영비(홍 보 및 교육 등)로 사용 ※ 지역별 특성 및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 불가 피한 경우 시·군의 승인을 통하여 제수당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 가능 ※ 운영비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와 자산물품취 득 및 시설개선비 사용은 불가함						◦ 집행기준 : 대체교사의 교통비 및 제수당으로 50%이상 지원, 그 외 사업추진(월급형 및 일 급형 인력풀 관련 포함)에 필요한 운영비(소 그룹 교육모임, 교육, 홍보 등)로 사용 ※ 지역별 특성 및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 불가 피한 경우 시·군의 승인을 통하여 제수당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 가능 ※ 운영비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와 자산물품취 득 및 시설개선비 사용은 불가함					

경기도보육사업안내 전문 읽기 ▶



## ▶ 기타 안내

### 올해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등록 금지... 경기도, LPG 차량 전환 지원

(2024.2.9.일자)

- 경유사용 차량을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전환하면 보조금 500만 원 지원
  - 올해 사업비 16억 3천만 원으로 326대 지원 예정
- 올해 1월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등록 금지 조치
  - 보조금 조기 마감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신청 필요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됐다. 다만 시행초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의 조건부로 경유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3천만 원을 편성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로, 지원규모는 총 326대다.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800만 원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등록지인 시군 환경 부서에서 2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나 시군별로 신청 가능 일자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경유차량의 경우 배출가스에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차량이 LPG 통학차량으로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통학차량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3,315대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을 지원한 바 있다.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 뉴스 >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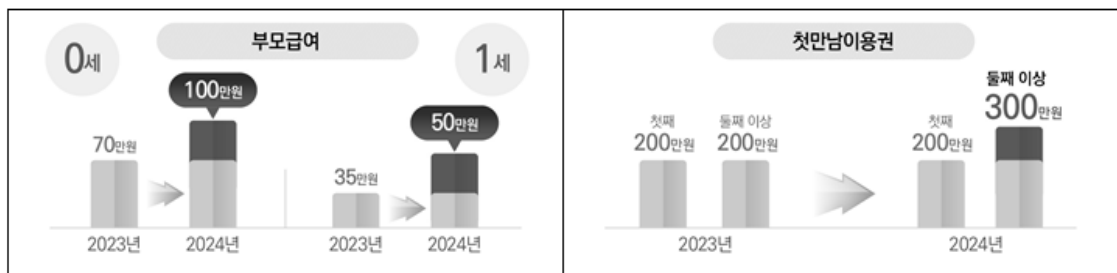
## 꼭 기억해요

## 3

## ▶ 부모급여안내

## ▶ 부모 급여

- (지원대상) 만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지원내용)
  - 만0세 아동 월 100만원 / 만1세 아동 월 50만원 현금(신청계좌로 입금)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 ※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 1577-2514

※ 출처 :보건복지부

- ▶ 2024년 부모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0~23개월)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보육지원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1. 보육료 신청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에서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로 지원자격 변경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연장 보육, 장애아 보육 등 기본보육료 (0세반540천원, 1세반 475천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예: 0세반 연장보육료 시간당 3천원 등)에 대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보육료)로 신청하지 않으시면 기본보육료 514천원 및 연장보육료 등을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 2. 어린이집 재원 중

- 어린이집을 재원하는 중에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전액을 매월 결제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장시간 이용하지 않고, 단기간, 일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부모급여(현금)로 신청·변경하시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3월 입소, 9월 퇴소하는 경우에는 4~8월이 어린이집 재원 중인 기간임

### 3. 어린이집 입·퇴소하는 경우

- 입·퇴소하는 월의 경우 일할 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되며, 기본보육료 (0세반 540천원, 1세반 475천원)와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 간의 차액은 입퇴소 다음월 또는 다다음월에 수당을 지급받았던 기존 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퇴소일 변동이 어려우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소시에는 퇴소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하며, 퇴소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퇴소일을 소급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만 0세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예시) \*24.3.12 어린이집 입소한 0세의 경우(0세반)

- 어린이집 지급액: 540,000원 × 17(실제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353,070

- 부모 지급액: 540,000원 - 353,070원 = 186,930원(다음월 또는 다다음월에 지급)

### 4. 부모보육료와 부모급여(현금)이 중복지급 되는 경우

- 부모보육료와 부모급여(현금)(0세 100만원, 1세 50만원)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부모보육료를 자부담하시거나, 부모급여(현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어린이집 평가제 안내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평가제는 2024. 7. 3.부터 시행됩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제 전면 개편 “과정 중심 평가, 어린이집 자율관리 기반으로 제도 전환”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4.1.2. 공포, '24.7.3. 시행 -

- **수요자 중심 보육품질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과정적 질 중심 평가**, 서술형 평가결과 공표 등의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7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4.1.2. 공포, '24.7.3. 시행
  -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번 개편에서 “규제”에서 “지원”, “관 주도”에서 “어린이집 주도”, “구조적 질 중심”에서 “과정적 질 중심” 평가로, 평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여, **어린이집 평가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객관적 제3자 평가와 어린이집 자율관리가 결합한 **효율적 보육 품질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안심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보육의 결정적 요소인 과정적 질을 집중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정**하고, 관찰과 면담 위주로 **평정방식**을 개선한다.
  - 평가 운영에서는 현장평가 전 단계인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부모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기반의 보육 자치문화**를 조성하며, 평가 결과는 부모에게 **신뢰성 있고 구체적인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알파벳 등급이 아닌 서술형 평가결과서로 공표**한다.
  - 평가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보육품질이 유지되도록 **불시점검 위주의 확인점검 제도를 폐지**하고, 어린이집별 **맞춤 컨설팅을 연계한 자율적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 한국보육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전국 17개 시도, 344개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지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평가제 개편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실제 참여 보육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4%**는 **개편된 제도에 만족**하였고, **94.8%**는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여 본 사업 운영 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편된 평가제도는 **법 시행일(7월 3일) 이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부터 적용**되어 10월에 현장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관기관과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은 “과정적 질 중심 및 어린이집 자율관리 기반의 제도 전환을 통해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어린이집 평가가 **보육품질 향상을 견인하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와 어린이집 선택권이 강화**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www.kcpi.co.kr) 알림마당) 보도자료

## ▶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 주요내용 안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을 주요내용입니다. 2024. 1. 2. 공포되었으며, 2024. 7. 3.부터 시행됩니다.

### 1. 추진배경

- 현행 평가제는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연계는 물론, 법 위반 사실 등을 근거로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등 규제적 성격이 강함
- 또한, 관 주도의 구조적 질 중심 평가 방식은 폐쇄적·수동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제도라는 지적과 지도점검 등 타 사업과 중복된 품질관리라는 지적이 있음

현행 등급제 평가결과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변경하여 영유아의 안전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한 평가제도로 개편 필요

###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을 주요 내용 ('24.1.2. 공포, '24.7.3. 시행)

-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정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어린이집에 대한 등급조정을 폐지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
-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실시하였던 확인점검 제도를 폐지하고,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24.1.2. 공포, '24.7.3. 시행)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2024년 1월 이용현황 기준으로 2월 지급 시부터 적용됩니다. 영아반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가.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나. 지원대상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0~2세반(0~1세 혼합반, 1~2세 혼합반, 2~3세 혼합반 포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반별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반을 개설(유지)한 어린이집

### 다. 지원금액 (정원 대비 부족 현원 1인당 지원단가)

(단위: 원)

반구분	0세(0~1세반)	1세(1~2세반)	2세(2~3세반)
지원금액	629,000	342,000	232,000

### 라. 지원금 산정방식

- (기본 전제) 인센티브는 정원을 미충족한 '공석'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시점(1일 0시/말일 24시) 기준으로 공석이 아닌 자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미지원
  - ※ 월중 입·퇴소에 따른 이동이 있더라도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시점(1일 0시/말일 24시) 기준으로 공석인 자리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생성됨에 유의
  - ※ 해당 반에 지급된 기관보육료와 인센티브의 합이 반별 기관보육료 최대 지원금액(정원 충족 시 기관보육료 × 정원)을 넘을 수 없음
- (퇴소 아동) 재원 중인 아동이 월중 퇴소하여 말일 기준으로는 공석인 경우, 해당 월의 인센티브는 퇴소아동 대상으로 지급된 '일할계산' 기관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되어 기관보육료가 일할 생성되므로(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퇴소로 인한 공석 자리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일할 생성된 기관보육료를 제외한 비용으로 지원함
- (퇴소아동 없이 공석) 기존 재원 아동이 월 1일 이상 출석한 경우 공석 대상 인센티브 전액 지원
- (출석 인정 특례) 부모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 특례기준(Ⅸ. 보육예산지원 2. 보육료 지원개요) 준용
- 인센티브 생성 시점에 정원을 충족한 반 또는 반별 정원 대비 현원이 50% 미만인 반에는 인센티브가 미지원되며, 기존과 같이 기관보육료만 지원함
- (지원 예시) 2024년 1월 보육일수 26일 기준
  - ①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2명, 월중 계속 공석 1명

(단위 : 원)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	재원	629,000	0
B	재원	629,000	0
공석	공석	0	629,000

- ②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1명, 입소 아동 1명, 월중 계속 공석 1명

(단위 : 원)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	재원	629,000	0
B	'24.1.17. 입소	$629,000 \times 13/26 = 314,500$	0
공석	공석	0	629,000

\* B의 경우,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공석이 아니므로 인센티브 미지원

- ③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1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1명

(단위 : 원)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	재원	629,000	0
B	'24.1.17. 입소	$629,000 \times 13/26 = 314,500$	0
C	'24.1.29. 퇴소	$629,000 \times 24/26 = 580,610$	48,390

\* 인센티브 생성 시점에 0세반 현원 2명이나, C가 1월29일까지 재원하여 기관보육료 일할계산 분을 받으므로, 인센티브는 해당 기관보육료와의 차액을 지원

- ④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1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2명

(단위 : 원)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	재원	629,000	0
B	'24.1.16. 퇴소	$629,000 \times 13/26 = 314,500$	314,500
C	'24.1.22. 입소	$629,000 \times 9/26 = 217,730$	0
D	'24.1.17. 퇴소	$629,000 \times 14/26 = 338,690$	0

\* 인센티브 생성시점에 0세반 현원 2명이나, B와 D가 월중 퇴소하여 기관보육료 일할계산 분을 받으므로, 인센티브는 해당 기관보육료 중 적게 받은 B 기관보육료와의 차액을 지원

- ⑤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1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2명

(단위 : 원)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	재원	629,000	0
B	'24.1.16. 퇴소	$629,000 \times 13/26 = 314,500$	120,970
C	'24.1.22. 입소	$629,000 \times 9/26 = 217,730$	0
D	'24.1.30. 퇴소	$629,000 \times 25/26 = 604,800$	0

\* 인센티브 생성시점에 0세반 현원 2명이나, B와 D가 월중 퇴소하여 기관보육료 일할계산 분을 받으므로, 인센티브는 해당 기관보육료 중 적게 받은 B 기관보육료와의 차액인 314,500원을 지원하여야 하나,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0세반 기관보육료 지원 최대 금액( $629,000 \text{원} \times 3 \text{명} = 1,887,000 \text{원}$ )을 넘을 수 없으므로 최대 금액과의 차액인 120,970원 지원

- ⑥ (1-2세 혼합반)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혼합반에 재원 아동 3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2명

(단위 : 원)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1세)	재원	342,000	0
B(1세)	재원	342,000	0
C(1세)	재원	342,000	0
D(1세)	'24.1.16. 퇴소	$342,000 \times 13/26 = 171,000$	0
E(2세)	'24.1.16. 퇴소	$232,000 \times 13/26 = 116,000$	226,000
F(2세)	'24.1.22. 입소	$232,000 \times 9/26 = 80,300$	0

\* 연령혼합반은 하위연령 기관보육료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생성시점에 1-2세 혼합반 현원 4명이나, D와 E가 월중 퇴소하여 기관보육료 일할계산분을 받으므로, 인센티브는 해당 기관보육료 중 적게받은 E 기관보육료와의 차액을 지원

- ⑦ (2-3세 혼합반)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혼합반에 재원 아동 4명, 퇴소 아동 2명, 월중 계속 공석 1명

(단위 : 원)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3세)	재원	0	0
B(3세)	재원	0	0
C(3세)	재원	0	0
D(3세)	재원	0	0
E(3세)	'24.1.16. 퇴소	0	232,000
F(2세)	'24.1.16. 퇴소	$232,000 \times 13/26 = 116,000$	116,000
공석	공석	0	232,000

\* 연령혼합반은 하위연령 기관보육료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생성시점에 2-3세 혼합반 현원 4명이나, E와 F가 월중 퇴소함. 단, F는 2세로 기관보육료 일할계산분을 지원하나, E는 3세로 기관보육료 미지원하므로, E의 공석은 2세 기관보육료 단가로 인센티브 지급, F의 공석은 2세 기관보육료 단가인 인센티브와 일할계산한 기관보육료와의 차액을 지원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 어린이집 연령반별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1개반
  - 정원은 탄력편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현원은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시점(1일 0시/말일 24시)을 기준(월 1일 이상 출석한 경우)으로 함
  - 어린이집 1개소당 0세반(0~1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1세반(1~2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2세반(2~3세 혼합반 포함) 중 1개반 지원
  - 생성일 당시 유효한 반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생성

반구분	정원기준	지원반	지원인원
0세반	3명	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	1명
0~1세반	3명	현원 2명인 반 중 1개반	1명
1세반	5명	현원 3명, 4명인 반 중 1개반	1~2명
1~2세반	5명	현원 3명, 4명인 반 중 1개반	1~2명
2세반	7명	현원 4명, 5명, 6명인 반 중 1개반	1~3명
2~3세반	7명	현원 4명, 5명, 6명인 반 중 1개반	1~3명

※ 월 중 상하위반 편성으로 인한 보육연령 변경 시 생성일(1일0시/말일 24시) 연령 및 반편성 기준으로 생성

**바. 지원절차**

1) 이용현황 확정

-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출석일수)을 전월 말일까지 확정
- 어린이집은 기관보육료 지원요건 및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요건을 반드시 사전 점검하여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시점(1일 0시/말일 24시)에 지원요건이 준수되어야 인센티브가 생성됨에 유의할 것

2) 지원금 생성

- (생성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생성
  - 어린이집 전체아동(입퇴소아동 포함)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 이용현황을 확정
    - ※ 지원금 생성시점에 휴지, 폐지된 어린이집도 전월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생성 지급 가능
    - ※ 지원금 생성 기준은 ‘라. 지원금 산정방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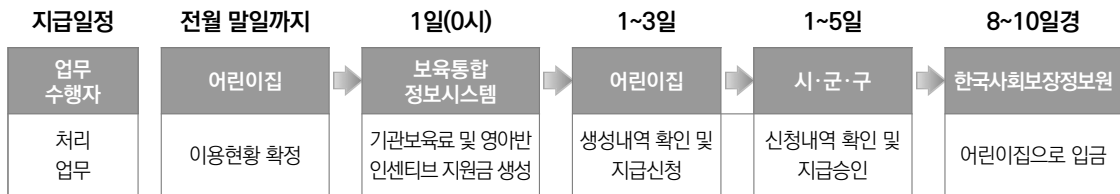
3)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3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
  - ※ 신청기간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 어린이집 신청 기간 내에 기관보육료 지원요건 위반을 해소한 경우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를 재생성하여 신청하면 신청 당월 지급 가능(기 신청한 경우 재생성 불가)
- (지원금 소급 신청)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이용현황 미확정 및 미신청으로 신청 당월에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4)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

- (승인 또는 반려) 시·군·구는 5일까지(어린이집 신청기간 3일 포함)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의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승인 또는 반려
- (재신청) 시·군·구에서 반려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 신청 건에 대해 당월 시·군·구 확인 기간 내 어린이집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승인 시 당월 지급가능
-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 승인 후 3~5일 이내에 어린이집 계좌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급  
 ※ 검토 및 정정기간은 시·군·구 근무일 기준이므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1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처리주체별 업무 흐름 1



※ 지급일정(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산정 제외)은 월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 지원중단

- 기관보육료 지원중단 사유 준용

아. 환수

- 기관보육료의 환수 규정 준용
-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아동의 반편성 변경 또는 동일 아동의 잦은 입·퇴소 시에는 추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환수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출처 : 2024년 보육사업안내 415p

## ▶ 어린이집 지도·점검

▶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 ②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 ③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근거 확인 시 구매품목·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히 첨부해야 함)
- ④ 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 ※ (원장)4대보험 신고 시 급여기본급, 직책급, 수당을 포함한 지출액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유의
- ⑤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 ⑥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 ⑦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 ⑧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대비, 보험가입 적정여부, 비상대비시설 및 대피훈련 실시여부, 교직원·차량기사 성범죄 경력 조회, 통학차량 차량신고 여부, 시스템을 통한 안전사고 보고,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등)
- ⑨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영유아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cctv 열람 포함
- ⑩ 어린이집 정보공시 준수 여부

### Tip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7개 항목 18개 범위의 모든 항목에 따른 내용을 입력하고 항목별 변경 주기에 따라 보유·관리정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지도·점검 결과,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이 발생합니다.

〈정보공시의 범위〉 \*예·결산 정보는 3년간 공시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 영유아보육법 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사항
- 영유아보육법 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궁금해요

## 4

**Q1** 어린이집을 폐지하고자 할 때 2개월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 처리 및 갑작스러운 폐지에 따른 보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날짜에 2개월 앞서서 이를 신청하고 보육교직원과 부모 및 보호자에게 폐지신고서 제출 사실을 알려 전원을 준비하거나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 신청 등 보육서비스의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2** 어린이집 설치 시 50m이상 이격해야 하는 위험시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액화석유 고압가스 충전·판매·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등이 있습니다.

**Q3** 바닥 놀이매트 구입 시 방염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놀이매트는 방염성능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구입한 매트의 구매내역서와 함께 구입한 물품의 방염처리성적서, 환경표지인증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Q4** 어린이집 주변 부지를 인수해 놀이터 설치 후 사용해도 되나요?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 놀이기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cpf.go.kr> 참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Q5** 0세 2명과 1세 2명을 같은 반에서 보육할 수 있나요?

0세와 1세 영아의 혼합반 운영은 가능하고 연령을 혼합하여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0세는 정원 탄력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0세 2명과 1세 영아 2명을 같은 반에서 한 명의 교사가 보육할 수는 없고, 0세 2명에 교사 1명, 1세 2명에 교사 1명이 각각 있어 교사 2명으로 혼합반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2023). 어린이집 설치·운영 통합 매뉴얼.



# II

## 재무회계

1. 주요 변경사항
2. 꼭 기억해요
3.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4.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 주요 변경사항

## ▶ 2024년 보육료 수납액

- 2024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0~2세반 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단가가 5% 인상 반영되었습니다.
  - 0~2세 영아의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기본보육료가 변동되었습니다.
  - 3~5세 유아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보육료로 지원됩니다.

(단위: 원)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 2023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 2024	2023년 대비 인상분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14,000	<b>540,000</b>	26,000	0
		1세반	452,000	<b>475,000</b>	23,000	0
		2세반	375,000	<b>394,000</b>	19,000	0
		3세반	280,000	280,000	-	0
		4세반	280,000	280,000	-	0
	5세반	280,000	280,000	-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b>587,000</b>	28,000	0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14,000	<b>540,000</b>	26,000	0
		1세반	452,000	<b>475,000</b>	23,000	0
		2세반	375,000	<b>394,000</b>	19,000	0
		3세반	280,000	280,000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4세반	280,000	280,000	-	
	5세반	280,000	280,000	-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b>587,000</b>	28,000	0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3~5세반	559,000	<b>587,000</b>	28,000	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3~5세반)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0~2세반)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3~5세반)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지원할 수 있음)

※ 출처 : 2024년 보육사업안내 337p

## ▶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 2024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연지급액	월지급액	연지급액	월지급액	연지급액	월지급액
1	27,002,400	2,250,200	26,071,200	2,172,600	25,114,800	2,092,900
2	27,621,600	2,301,800	26,185,200	2,182,100	25,188,000	2,099,000
3	28,387,200	2,365,600	26,268,000	2,189,000	25,236,000	2,103,000
4	29,180,400	2,431,700	26,416,800	2,201,400	25,281,600	2,106,800
5	29,923,200	2,493,600	26,868,000	2,239,000	25,326,000	2,110,500
6	30,904,800	2,575,400	27,314,400	2,276,200	25,365,600	2,113,800
7	31,921,200	2,660,100	27,910,800	2,325,900	25,401,600	2,116,800
8	33,051,600	2,754,300	28,358,400	2,363,200	25,440,000	2,120,000
9	33,910,800	2,825,900	28,936,800	2,411,400	25,470,000	2,122,500
10	34,803,600	2,900,300	29,581,200	2,465,100	25,509,600	2,125,800
11	35,653,200	2,971,100	30,168,000	2,514,000	25,680,000	2,140,000
12	36,625,200	3,052,100	31,030,800	2,585,900	25,864,800	2,155,400
13	37,380,000	3,115,000	31,623,600	2,635,300	26,360,400	2,196,700
14	38,149,200	3,179,100	32,252,400	2,687,700	26,911,200	2,242,600
15	39,217,200	3,268,100	32,942,400	2,745,200	27,426,000	2,285,500
16	39,774,000	3,314,500	33,720,000	2,810,000	28,165,200	2,347,100
17	40,544,400	3,378,700	34,465,200	2,872,100	28,744,800	2,395,400
18	41,398,800	3,449,900	35,178,000	2,931,500	29,438,400	2,453,200
19	42,183,600	3,515,300	35,820,000	2,985,000	30,100,800	2,508,400
20	42,900,000	3,575,000	36,529,200	3,044,100	30,787,200	2,565,600
21	43,724,400	3,643,700	37,539,600	3,128,300	31,858,800	2,654,900
22	44,497,200	3,708,100	38,272,800	3,189,400	32,522,400	2,710,200
23	45,186,000	3,765,500	38,883,600	3,240,300	33,152,400	2,762,700
24	45,879,600	3,823,300	39,578,400	3,298,200	33,752,400	2,812,700
25	46,663,200	3,888,600	40,214,400	3,351,200	34,411,200	2,867,600
26	47,389,200	3,949,100	40,849,200	3,404,100	35,010,000	2,917,500
27	48,061,200	4,005,100	41,401,200	3,450,100	35,456,400	2,954,700
28	48,758,400	4,063,200	42,004,800	3,500,400	36,051,600	3,004,300
29	49,400,400	4,116,700	42,667,200	3,555,600	36,621,600	3,051,800
30	50,102,400	4,175,200	43,242,000	3,603,500	37,215,600	3,101,300

※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출처 : 2024년 보육사업안내 369p

##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급여명세서 수당 지원 기준

- 2024년부터 적용되는 보육교직원 급여명세서 수당 지원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급여 신고 시, 수당 포함한 총 급여액을 신고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당의 종류(항목)	비고
① 원장 직책급	● 원장수당, 직책수당, 업무수당 등 “원장 직책급”에 포함
② 원장 처우개선비	● 민간·가정 등 원장 수당, 국공립·법인 시설 원장 수당, 마음건강지원수당, 스승의날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원장 처우개선비”에 포함
③ 원장 겸직수당	● 간호겸직수당, 서무겸직수당, 취약보육겸직수당, 보육교사 겸직수당 등은 “원장겸직수당”에 포함
④ 주임수당	● 주임수당, 직책수당, 업무수당 등은 “주임수당”에 포함
⑤ 보육교사(교직원) 처우개선비	●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국공립·법인 시설 보육교사 수당, 마음건강지원수당, 스승의날수당, 연가보상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등은 “보육교사(교직원) 처우개선비”에 포함
⑥ 보육교사(교직원) 겸직수당	● 간호겸직수당, 서무겸직수당, 취약보육겸직수당 등은 “보육교사겸직수당”에 포함
⑦ 자격수당	● 치료사수당, 조리사자격수당, 시설장자격수당 등은 “자격수당”에 포함
⑧ 특수교사수당	● 특수교사수당,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수당 등은 “특수교사수당”에 포함
⑨ 경력인정 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 근속장려수당, 근속수당, 운영개선비, 행복수당, 장기재직수당, 장기재직휴가지원 등은 “경력인정수당(장기근속수당 등)”에 포함
⑩ 연장근로 수당	● 연장근로수당
⑪ 야간근로 수당	● 야간근로수당
⑫ 휴일근로 수당	● 휴일근로수당
⑬ 휴가수당 (명절휴가비 등)	● 명절수당, 보육교사맞춤형복지포인트지원, 명절격려금, 하계휴가비, 하계격무수당 등은 “휴가수당(명절휴가비 등)”에 포함
⑭ 상여금	● 복지수당, 성과수당, 분기상여수당, 연말수당 등은 “상여금”에 포함
⑮ 연구 활동비	● 연구수당, 연구개발비, 장학연구수당, 보육프로그램연구수당, 교재연구수당 등은 “연구활동비”에 포함
⑯ 복리 후생비	●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건강검진비 등은 “복리후생비”에 포함
⑰ 특별수당	● 특별수당, 특별처우수당, 농촌특별근무수당, 농촌특별수당, 회계특별직무수당, 운영관리특별수당, 관리수당 등은 “특별수당”에 포함
⑱ 식비	● 식대, 식비, 급식비, 야간급식수당 등은 “식비”에 포함
⑲ 교통비	● 운전수당, 자가운전수당, 운전보조금, 교통비, 교통수당, 차량지원비(교통비) 등은 “교통비”에 포함
⑳ 기타수당	● ①~⑳ 이외 모든 수당은 “기타 수당”에 포함

▶ **보육사업안내 변동사항**

**보육료 결정 및 수납**  
90p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 보육료 내역: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 급·간식 재료비의 경우 시도교육청(지청)의 별도 지원이 있을 경우 별도 재원을 우선 활용

23. 9. 1. 시행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육료 결정 및 수납에 대해 살펴보기 바랍니다. 급·간식 재료비의 경우 시도교육청(지청)의 별도 지원이 있을 경우 별도 재원을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Ⅰ 2024년 보육료 지원단가 I**  
(월 기준, 단위: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적용시기	(‘24.1.1~)	(‘24.1.1~)	(‘24.1.1~)	(‘24.1.1~2.29.)	(‘24.3.1~)	(‘24.1.1~)
계	1,169,000	817,000	626,000	280,000	280,000	1,273,000
부모보육료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80,000	587,000
기관보육료	629,000	342,000	232,000	-	-	686,000

**보육료 지원단가 안내**  
315p

-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 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최대 3년간),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만 나이 변경에 따라 보육료 연령 구분에 ‘만’ 글자가 삭제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지원단가도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22p

다. 급여신청 장소 및 시기

- (장소) 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보장처리
- \* 가정양육수당은 정부24(온라인, 모바일앱)로도 신청 가능
- ※ 보육료·양육수당 전국 신청에 따라 처리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지 관할 외 지역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즉시 이관

보육료·양육수당 전국 신청에 따라, 주소지 관할 외 지역에서 접수 시에는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즉시 이관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정부24(온라인, 모바일앱)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  
산정 방식**  
330p

**다. 산정방식**

1) 입·퇴소 아동

- ※ 아동이 0,1세(0~23개월)인 경우 입·퇴소에 따른 보육료 정산금액이 보호자에게 추후 지급되기 때문에 입·퇴소일에 대한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의사 통일이 중요하고, 일자 변경이 어려움
- ※ 아동이 0,1세(0~23개월)인 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예시) 5월 8일에 퇴소한 0세 아동(0세반)의 부모보육료 지원금액 및 부모지급액**

- 부모보육료 지급액(어린이집)  $540,000 \times 6/25(\text{일}) = 129,600\text{원}$
- 부모 지급액  $540,000 - 129,600 = 410,400\text{원}$
- 6일 : 실제 보육일수 / 25일 : 보육가능일수(공휴일 제외)

**(참고)** 0,1세(0~23개월) 아동의 경우 입·퇴소한 달의 부모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나머지 차액은 보호자에게 다음월 또는 다다음월 지급할 계획(당월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을 안내)

**(지급액 예시)** 3월 12일 입소한 0세 아동(0세반)

- 어린이집 지급액 :  $540,000 \times 17/26(\text{일}) = 353,070\text{원}$
- 부모 지급액 :  $540,000 - 353,070\text{원} = 186,930\text{원}$

부모급여 확대로 보육료 정산 금액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23년 0세-) '24년 0,1세) 대상을 추가하고, 0,1세 아동의 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결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입·퇴소한 달의 부모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나머지 차액은 보호자에게 익월 또는 익익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당월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을 안내)

**보육료 지원  
출석인정특례  
적용기간**  
331p

**다. 산정 방식**

2) 계속 재원 중인 아동

구분		인정 기간	증빙 서류	비고	코드
아동 본인	질병·부상	결석 시작일~치료기간 또는 퇴원일(최대 90일)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1
가족	부모의 출산	출산일(출산일을 포함하여 전후 가능) ~ (최대 90일)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2

보육료 지원에 따른 출석인정특례 적용기간을 기존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 한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375p

**나. 지원기준**

2)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1세반: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세반: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 이상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 코로나 특례(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원충족률) 종료에 따라 '24년에 한해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단,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정원 충족 후 미충족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2024년 2월까지 효력 유지

코로나 특례 종료에 따라 '24년에 한해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377p

**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 대상지역에 설치된 가. 지원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 보육교사: 보육교사(시설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액에는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총액이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 → 교사 봉급액 평균액 지원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 → 봉급 총액과 인건비 지원액의 차액 지원

**(예시)**

- ① 영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인건비 80% 지원함에 따라 월 봉급액 226만원에서 180만원(80%) 차감한 나머지 차액인 46만원 지원
- ② 영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유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영아반은 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반은 30% 지원함에 따라 월 봉급액 226만원에서 각각 180만원(80%), 67만원(30%) 차감한 나머지 차액인 각각 46만원, 159만원으로 총 205만원 지원
- ③ 영아반 7호봉 보육교사 2명, 유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영아반은 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반은 30% 지원함에 따라 월 봉급액 226만원에서 각각 180만원(80%), 180만원(80%), 67만원(30%) 차감한 나머지 차액인 각각 46만원, 46만원, 159만원인데 교사 봉급액 평균액을 초과하므로 한도액인 226만원 지원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추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추가 인건비 지원액에는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총액이 실제근무 보육교사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휴일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b> 406p	<b>다. 휴일 어린이집</b> 3) 인건비 지원 기준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수당 일일 <u>58,000원</u> 지원
	휴일 운영하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이 2.5% 인상되어 일일 58,000원이 지원됩니다.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보육할 경우 적용됩니다.

<b>토요보육 근무수당 신설</b> 407p	<b>라. 토요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b> 1) 인건비 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토요일에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li> <li>• 토요일 보육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 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li> <li>• 토요일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이고, 교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토요 근무수당 일 <u>58,000원</u> 지원</li> </ul>
	토요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토요근무수당 일 58,000원 지원됩니다. 토요일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이고, 교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b>기관보육료 지원금 산정방식</b> 411p	<b>라. 지원금 산정방식</b> • (입·퇴소아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 지원) (중략) ※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아동(3.2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기관보육료는 보육료지원 자격과 관계없이 지원되므로 문구가 삭제 되었습니다.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시설**  
422p

**가. 대상시설**

- 지원 시점에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교재·교구비가 필요한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열린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휴일어린이집, 야간연장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간 협력 사업 참여 어린이집 우선 지원
  - ※ 중앙 또는 지자체 어린이집간 협력 사업 참여 어린이집은 정원총족율과 관계없이 선정

**나. 지원기준**

- 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 지자체는 예산범위, 우선지원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운영이 열악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등 대상시설을 포함하여 별도 지원 기준 마련 가능

평가제 개편 등에 따른 사업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열린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휴일어린이집, 야간 연장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간 협력사업 참여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간 협력사업 참여 어린이집은 정원총족율과 관계없이 선정됩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40p

**마. 어린이집의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 개보수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지방비 보조금에 대한 별도 반납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 \* 취득(준공)일 기준으로 만으로 계산함 (예시) 국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 공사 준공한 어린이집 6년6개월 이후 폐지할 경우 420만원 반납해야 함(이미 반납된 국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
- 장비비의 경우, 조달청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함(지방비 보조금에 대한 별도 반납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지자체 감사시에 상이한 기준으로 반납받고 있어 명시할 필요가 있어 예시가 제시되었습니다. 기능보강비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폐지 시에는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꼭 기억해요

# 2

### ▶ 어린이집 지출의 원칙(2024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66p)

▶ 2024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어린이집 지출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이용하고,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범위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재무회계 규칙 제29조), 이 경우 현금영수증과 기타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 ▶ 어린이집 비용의 지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 어린이집 회계지출은 영유아보육법 근거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별표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 바. 비용의 지출

1.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봉급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급하는 교사 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봉급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임금명세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4. 어린이집 비용 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 ▶ 각종 지원금 연계 편성

▶ 어린이집의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 시, 계정과목 중 연계편성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연계편성이란 세입과 세출항목이 일치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별활동비(211목)- 특별활동비지출(411목) 편성
- 기타필요경비(221목)- 기타필요경비지출(421목) 편성
- (기타운영비+ 적립금+ 장기차입금상환+ 차량할부금)= **총 보육료수입 X 15% 이내**
- **차입금 발생 시 세출 차입금 상황**으로 연계 편성

##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4대보험 요율 반영

▶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4대보험 요율이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반영되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 교직원 관리 > 설정)

내 용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매년 1월, 7월 변동)	
			근로자	사업자
요 율	3.495%	12.95%	0.9%	1.15%

산재보험 : 변동없음(임금채권부담금포함 0.76%)

국민연금 : 변동없음(근로자 4.5%, 사업자 4.5%)

##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계산

▶ 보육교직원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확정기여형(DB형)과 확정급여형(DC형)이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부담하며, DB형은 기준책임준비비에 최소(의무) 적립비율을 곱한 값으로서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의 수준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의 납입주체가 됩니다.

- **보육교직원 인건비(급여 + 수당) × 1/12**

## ▶ 예비비

▶ 예비비는 예상하지 않았던 지출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항목입니다.

- 예산총액의 2% 이내 편성

### ▶ 계정항목 오류 확인

- ▶ 어린이집의 세입과 세출을 기입하기 이전 계정항목을 확인하여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많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연장 아동의 식식대를 학부모로 수납하는 경우, 급식비가 아닌 ‘기타필요경비지출’로 편성
- 적립금과 동시 장기차입금 상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 어린이집 핸드폰을 예산으로 구매할 경우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212목)**: 전신전화료 중 휴대폰의 경우 1대에 한하여 이용료 지원
- 어린이집 회계에서 이용료를 지출하는 핸드폰은 기기를 구매(자산취득 또는 자부담)하여 월 이용료만 납부하도록 함(자산취득비로 핸드폰 구매 시, 어린이집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상품 구매 등 소액결제료를 월이용료에 포함하여 지출 불가)

### ▶ 보육료 지원 출석 일수 안내

-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1일 이상 출석시 정부지원보육료의 100%, 6~10일 출석시 50%, 1~5일 출석시 25%를 지원**합니다.(출석일수 0일이면 미지원)
  - ※ 입·퇴소월에는 일할계산 하여 지원하며, 아동의 질병·부상, 부모의 입원·출산에는 최대 2개월까지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출석일수 0일이면 미지원)
- 3~5세 누리과정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13.3.1. 이후 지원이력)

###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금명세서

- ▶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변경된 내용 시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총액
4.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저장된 문서이며, 전자문서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문자, E-mail 등으로 교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교부한 후 보육교직원으로부터 수령확인을 받아야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수령확인 예: 문자 답변 ‘임금명세서 확인하였습니다’ 등)

[근로기준법- 별지 제17호의2서식]

## 임금 명세서(예시)

지급일: 0000-00-00

성명		생년월일(사번)		
부서		직급		
<b>세부 내역</b>				
지급		공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매월 지급	기본급	근로소득세		
	연장근로수당	주민세		
	직책수당	국민연금		
	...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공제액 계		
		실수령액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시간 수	야간근로시간 수	휴일근로시간 수
<b>계산 방법</b>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 수(00시간) X (시급) X 1.5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시간 수(00시간) X (시급) X 1.5			

- ※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기재가 필요 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기울어진 글씨는 예시로 작성하였으니,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산출할 때 시급은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근무자 월 급여액 산출기초 : **시간급 X 근무시간 X (근무일수+유급주휴(1일)) X 365일 ÷ 7일 ÷ 12개월**)  
 예 1) 4시간(105시간) 근무자 : 9,860원X 4시간 X 6일 X 365일 ÷ 7일 ÷ 12개월 = 1,028,210원  
 2) 6시간(157시간) 근무자 : 9,860원X 6시간 X 6일 X 365일 ÷ 7일 ÷ 12개월 = 1,542,310원

**Tip**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 ①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해당 교사의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일수를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② 시간제, 일용직 근무자는 근무시간·일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므로, 산출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 ③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발생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산출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3

▶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오류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작성 후 충족되지 않은 항목이 있을 경우 조속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결과	비고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사전등록	운영카드 발급(NH농협중앙회·신한은행) - <b>핀뱅킹</b> 신청되어 있다	□ Y □ N	
		법인인증서 등록되어 있다	□ Y □ N	
		개인인증서 등록되어 있다	□ Y □ N	
		헬프데스크(1644-6840)에 <b>자료변환 요청</b> 이 되어 있다	□ Y □ N	
	사전교육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내 동영상 교육을 수강해 본 적 있다	□ Y □ N	
예산 수립 및 결산	예·결산서, 추경 예산서 작성 및 공개	예산서 편성 시 과목별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을 작성하고 있다	□ Y □ N	
		예산서 편성 시 과목별 한도액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을 작성하고 있다	□ Y □ N	
		예산서(회계연도 개시 5일전)·결산서(5월 말일), 추경예산서(7일 이내) 제출 시기를 준수하여 지자체에 제출되어 있다	□ Y □ N	
		예·결산서, 추경 예산서를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공개되어 있다	□ Y □ N	
		예산서, 추경 예산서를 준용하여 지출을 준수하고 있다	□ Y □ N	
예산 집행	수입·지출 결의서 작성 및 관리	주기적으로 수입·지출에 따른 결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 Y □ N	
		타인이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결의서를 관리하고 있다	□ Y □ N	
		수입·지출에 따른 증빙서류가 전체 서류에 첨부되어 있다	□ Y □ N	
		과년도 수입·지출시 집행시기를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다	□ Y □ N	
		과지출·과오납에 따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	□ Y □ N	
	급·간식비용 준수 및 관리	급·간식 구입에 따른 적정비용 준수되어 지출되고 있다(영아 2,350원, 유아 2,950원) <b>1인당(영아1,900원, 유아 2,500원) +도(370원)+시(80원)</b>	□ Y □ N	
		급·간식 구입 시 식단에 명시된 부식재료를 준수하여 구입하고 있다	□ Y □ N	
		보육교직원의 식사비용을 수입처리 하여 적정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 Y □ N	
	필요 경비 수납 및 관리	필요경비 수납에 따른 비용지출 시, 수입액의 86%이상을 준수하여 지출하고 있다	□ Y □ N	
		필요경비 수납 시, 수납주기 및 금액을 잘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수납하고 있다	□ Y □ N	
		필요경비 수납에 따른 정산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분기별 정산 권유)	□ Y □ N	
		필요경비 수납액을 학부모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or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Y □ N	
		필요경비 수납에 따른 동의서를 학부모로부터 회신하여 보관하고 있다	□ Y □ N	
		필요경비 수납 시, 차량운행비 및 아침·저녁 급식비를 별도로 수납하여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다	□ Y □ N	
		특별활동실시에 따른 관련서류를 잘 관리하고 있다	□ Y □ N	

구분		내용	결과	비고	
예산 집행	급여 지출	보육교직원 호봉기준(or 최저인건비 이상)을 잘 준수하여 지급하고 있다 <b>(24년 시급 9,860원)</b>	□ Y □ N		
		매월 정기적인 일정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Y □ N		
		매월 본인에게 <b>급여명세서</b> 를 지급하거나 급여대장 서명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 Y □ N		
		급여를 본인의 계좌에 지급하고 있다	□ Y □ N		
		본인 4대 보험료 및 갑근세를 정기적으로 부과하여 납부하고 있다 (갑근세는 정기납 가능)	□ Y □ N		
	기타 운영비 관리	<b>보육료수입의 15%범위</b> 를 준수하여 지출하고 있다	□ Y □ N		
		기타운영비 지출의 적정범위(용자금이자,차량할부,감가상각비,임대료 등)를 준수하고 있다	□ Y □ N		
		기타운영비 적립에 따른 비용 지출 시, 운영비 계좌로 여입하여 지출하고 있다	□ Y □ N		
		적립금은 적립 목적에 맞게 비용 지출을 준수하고 있다	□ Y □ N		
		기타운영비 적립 손해에 따른 비용을 가입 책임자가 보전하고 있다	□ Y □ N		
	업무 추진비 관리	기관운영비 지출 시, 지출범위를 준수하여 지출되고 있다	□ Y □ N		
		직책급 지급 시, 예산을 준수하여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다	□ Y □ N		
회의비 지출범위를 준수하여 범위 내에서 지출되고 있다		□ Y □ N			
		추경 시 업무추진비를 전용하지 않고 연초 예산액을 잘 준수하여 지급되고 있다	□ Y □ N		
문서 관리	보조 장부 비치 및 관리	회계장부와 연계하여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다	□ Y □ N		
		연도별로 장부가 관리되고 있다	□ Y □ N		
		□ 총계정원장 □ 예·결산서 □ 현금출납부 □ 수입·지출 결의서 □ 비품대장 □ 봉급대장 □ 정부보조금 명세서			
		모든 문서는 보관 시기를 준수하여 관리되고 있다	□ Y □ N		
			중요문서는 적정하게 폐기 처리되고 있다	□ Y □ N	
	기타 회계 자료 점검	지자체와 회계 업무 진행 시, 공문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상호 자료 교류가 되고 있다	□ Y □ N		
		회계 업무 위임 시, 회계담당사무원의 보증보험 가입 & 위임장을 작성하여 업무를 위임하여 분담할 수 있다	□ Y □ N		
		어린이집에서 지자체의 통장계좌 개설 범위를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다	□ Y □ N		
		누리과정운영비 수입비용에 따른 지출금액과 범위를 준수하여 지출하고 있다	□ Y □ N		
		출장여비 지급 시, 출장명령 근거 자료(보고서, 공문 등)를 첨부하여 증빙하고 적정 금액을 출장여비로 지급하고 있다	□ Y □ N		
		어린이집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학부모가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Y □ N		
			보육료결제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어린이집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	□ Y □ N	
운영 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 기초자료(정관)가 마련되어 있다	□ Y □ N			
	운영위원회 개최시기 및 횟수를 준수하고 있다	□ Y □ N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보육사업안내를 준수하고 있다	□ Y □ N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예·결산서, 추경예산서에 대해 심의되었던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 Y □ N			

※ 출처: 2021 경기도형보육컨설팅 운영매뉴얼(컨설팅트용) 24년 기준 반영 일부수정

##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

# 4

###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 세입 기입 전에 항목을 확인해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만 0~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 등		
				112	부모부담 보육료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02	수익자 부담 수입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211	특별활동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22	기타 필요경비	221	기타 필요경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등 기타 필요경비	
03	보조금 및 지원금	31	인건비 보조금	311	인건비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한다)		
				321	기관보육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의 일정 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2	연장보육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장보육비용의 일정 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3	공공형 운영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		
				324	그 밖의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식·간식 재료비 및 냉난방비, 누리과정운영비 등		
33	자본 보조금	331	자본보조금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경연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단기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과목						내역
관	항		목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 처분 수입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에서 이전받은 금액
07	과년도 수입	71	과년도 수입	711	과년도 수입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812	그 밖의 잡수입	차량·물품 등 어린이집 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수입, 교육 외 수입(보증금 수입 등), 보육교사 실습비, 보험 수령액(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등
09	전년도 이월액	91	전년도 이월액	9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으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비고 :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과목에 따른다.

###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 세출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기 전 항목을 확인하여야 하며, 항목을 결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해당 시·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		과목				내역		
		항	목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11	원장급여	원장인건비 중 기본급 등		
				112	원장수당	원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20	보육교직원 인건비	121	보육교직원 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등		
				122	보육교직원 수당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30	기타인건비	131	기타 인건비	기타 일급 또는 단기 채용 임시·일용직 급여		
		140	기관부담금	141	법정부담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등
						21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세금 및 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자동차·화재 등), 전신·전화료(통신비) 등
						213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214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215	차량비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		
216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서비스 지급비(교직원 건강검진비·피복비·치료비·급량비 등)		
217	기타 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분류되지 않은 경비(건물임대료, 건물용자금 이자 등)		
220	업무 추진비			221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222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223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과목			내역	
관	항	목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 보육활동비	311	교직원연수· 연구비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수비 및 연구비
				312	교재·교구 구입비	보육 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313	행사비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경비
				314	영유아복지비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건강검진 비용 등)
				315	급식·간식 재료비	정규보육시간내 제공되는 주·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400	수익자 부담경비	410	선택적 보육활동비	411	특별활동비 지출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420	기타 필요경비	421	기타 필요경비 지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 비, 졸업앨범비, 기타 필요경비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완성에 수년을 요하 는 공사나 제조 등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600	상환· 반환금	610	차입금 상환	611	단기 차입금 상환	단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12	장기 차입금 상환	장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20	반환금	621	보조금 반환금	정부보조금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2	보호자 반환금	보호자 부담비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3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하는 법인회계 로의 전출금
700	재산 조성비	710	시설비	7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712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경비
		720	자산구입비	721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노후 업무용차량 교체 등 차량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그 외 자산 취득비
800	과년도 지출	810	과년도 지출	811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지출대상 부 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 단위 절사금 등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

※ 비고: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과목에 따른다.



# III

##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1. 주요 변경사항
2. 궁금해요
3. 꼭 기억해요

# 주요 변경사항

## ▶ 보육사업안내

▶ 2024년 보육사업 안내 주요 변동사항 중 **어린이집 CCTV**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b>부록5)</b> <b>어린이집</b> <b>영상정보처리</b> <b>기기</b> <b>가이드라인</b> 부록200p</p>	<p>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p> <p>5. 설치·운영 점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b>월 1회</b> 이상 점검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li> <li>• 누구든지 법 제15조의5 제5항에 따른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15조의5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li> </ul>
<p>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주기가 월1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p><b>부록5)</b> <b>어린이집</b> <b>영상정보처리</b> <b>기기</b> <b>가이드라인</b> 부록197p</p>	<p>⑥ 열람 및 제공</p> <p>4)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5조의5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의 요청은 신분증,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담당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도 안전업무 수행(제42조, 아동복지법 제66조, 아동학대예방활동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열람요청은 제한됨</li> </ul> </li> <li>• 보육담당 관계공무원인 경우에도, CCTV 열람은 아동학대 여부 및 영유아의 안전 확인 업무 수행 목적으로 한정하여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재무회계 확인 관련 목적의 CCTV 열람은 지양</li> </ul> </li> </ul>
<p>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도점검시에도 목적에 맞지 않는 열람은 제한됨을 강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CCTV열람은 아동학대 여부 및 영유아의 안전 확인 업무수행 목적으로 한정하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p>	

## 궁금해요

## 2

**Q1** 열람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의 4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열람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10일 이내는 어떤 기준인가요? 명절, 공휴일 등 연휴로 인해 기간이 촉박합니다.

10일의 기준은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Q2** 아침 어린이집에 출근하니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해 점검을 받았습니다. **저장장치 이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고 이전 녹화 영상정보는 복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 달 지자체 점검도 있고 혹시 열람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인 불상의 사유로 CCTV 저장장치나 카메라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즉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유지보수 업체 또는 수리업체에 문의하여 조치하고 고장의 일시, 사유, 장비 교체일 등을 명시한 문서나 메일을 공식적으로 수신, 보관해야 합니다.

**Q3**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받지 않은 교직원도 영상정보를 취급할 수 있나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합니다.

**Q4**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몇 개의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나요?

어린이집이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구와 주변 경계부(담장)에 부착하면 됩니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곳이거나 주차장 등 동선이 분리된 장소가 있다면 별도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꼭 기억해요

# 3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관리를 위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는 2023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과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해를 돕고 어린이집에서의 CCTV 운영 관리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4개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로 점검해야 할 내용을 숙지한 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목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체크리스트 항목은 필요시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어린이집 이용행위신고서 내  
어린이집 CCTV 권유 상담 코너 개설  
어린이집 CCTV 운영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린이집 CCTV 설치 시 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보호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CCTV 관련  
자문·상담을 받으실  
분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

**1670-2082** 연관 후  
**2번** 클릭 시 자동 연결 됩니다.

한국보육진흥원

※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2023).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관리를 위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안내

※ 경로 :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발간물 > 기타발간물

# IV

## 급식·위생·안전

1. 주요 변경사항
2. 꼭 기억해요

# 주요 변경사항

## ▶ 보육사업안내

▶ 2024년 보육사업 안내 주요 변동사항 중 급식·위생·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b>어린이집 건강·급식·위 생관리</b> 110p</p>	<p>나. 급식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2) 급식위생 -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음. - 완제품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가공식품을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경우는 제품의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등 제품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보관함으로써 해당 가공식품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 (고시된 가공식품 참고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p>
<p>소비기한 표시제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완제품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등 제품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 보관함으로써 해당 가공식품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p>	
<p><b>어린이집의 안전관리</b> 123p</p>	<p>바. 등하원시 안전관리 3) 보호자 인계 확인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등·하원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등·하원시 안전하게 영유아가 인계되지 않았을 때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 - 대면 및 유선통화 원칙이나 부득이 문자 및 SNS 발송 시 회신 확인 ※ 보호자 지정 및 귀가동의 관련 사항은 &lt;서식 II-6&gt; 참고</p>
<p>등·하원 시 안전하게 영유아가 인계되지 않았을 때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대면 및 유선통화 원칙이나 부득이 문자 및 SNS발송 시에는 회신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귀가동의 관련 서식은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양식으로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p>	

**어린이집 통합  
안전점검표**  
부록351p

① 급식 분야

구분	점검항목
위생 관리 및 식재료 관리	- 소비기한 확인 및 선입선출을 준수하고 있다.
	- 보존식 보존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배식 직전 소독된 전용 용기에 100g이상 채취하여 144시간 냉동보관/20인 초과 어린이집 의무사항)
	- 세제, 소독제, 살충제를 구분할 수 있게 관리하여 분리보관하고 방충, 방서 등을 위한 조치 및 관리를 하고 있다.
	- 식재료의 입고날짜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식재료에 라벨을 붙이는 것에 대한 업무부담이 있어 경감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개정하였습니다.  
보존식은 20인 초과 어린이집은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꼭 기억해요

# 2

### ▶ 집단급식소에 대해 알아봐요

####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신고대상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은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곳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은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이며,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한 공간을 갖추고 환기 시스템과 해충 등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급식 인원이 작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따르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만, 1회 50명 이하의 인원이라면 집단급식소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 소비기한 표시제도

#### 1) 목적

소비자 혼란방지, 식품폐기 감소,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국제기준 조화 및 탄소중립 실현

- 소비기한 : 식품 등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2) 표시대상 : 기존 유통기한 표시대상은 소비기한으로 표시

-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식품유형별로 제조년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3) 표시방법

- 소비기한은 “00년00월00일까지”, “00.00.00까지”, “0000년00월00일까지”, “0000.00.00까지” 또는 “소비기한:0000년00월00일”로 표시
-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00일까지”, “제조일로부터 00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00년까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00일”로 표시  
 ※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을 반드시 별도 표시
- 소비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  
 ※ (예시) 후면 상단 표시일까지, 제품 측면 표시일까지 등

### 4) 제도시행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우유류(냉장보관제품에 한함)는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어린이집 보존식에 대해 알아봐요

모든 어린이집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21.10.1.개정) 다만, 20명 이하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존식에 대한 상세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음
- 완제품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가공식품을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경우는 제품의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등 제품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보관함으로써 해당 가공식품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고시된 가공식품 참고: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기준)

## 참고 올바른 보존식 보관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 \*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
  - 보존식 대상: 제공한 모든 급식 및 간식, 대체 음식 등(기존 음식 소진에 따라 별도 추가 제공되는 음식, 식품 알레르기 에 따라 대체 제공되는 음식 등 일체)
  - 보관방법
    -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인분(각 **150g**이상 보관 권장)이상 독립 보관, 완제품으로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로 보관
    - 보존일 및 폐기일((날짜, 시간(시/분)), 채취자 성명, 메뉴명을 철저히 기록, 보존식 용기에 부착하여 보관
    - 영하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
    - 스테인리스 재질로 각각의 뚜껑이 있는 전용용기 또는 1회용 멸균 팩에 보관
    - 세척소독 → 보관함 상단 보관 → 음식 담기 직전 소독 · 건조 사용



V

# 보육 교직원 관리

1. 주요 변경사항
2. 꼭 기억해요
3.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 주요 변경사항

## ▶ 보육사업안내

▶ 2024년 보육사업 안내 주요 변동사항 중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직원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  
105p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

**나) 검진 기관 및 양식**

-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으로 같음

※ 보육교사는 비사무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대상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 진단 매년 1회\* 실시(모든 어린이집)  
 \* 식품위생법의 매년 1회는 건강진단을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  
 -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은 반드시 실시  
 - 장티푸스의 경우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 종사자는 필수 실시,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관련 종사자는 권장  
 ※ **단순히 배식을 지원하는 교사 등 배식도우미의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개인위생 조치 관리 권고)**

**다) 검사항목**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
  - ※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같음 가능
  - ※ 신규채용자,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채용일(업무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실시
- 잠복결핵검진: 어린이집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회 실시(면역학적 검사)
  - ※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잠복결핵검진 실시
-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음

※ 보육실습생의 경우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권장

신규 채용 또는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채용일(업무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비사무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대상이며, 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인력은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모든 어린이집)

<p><b>보육교직원 임면</b> 177p</p>	<p>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p> <p>※ 취업하려는 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포함)는 취업 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p> <p>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p> <p>※ 취업하려 하는 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포함)는 취업 전에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함</p>
-------------------------------------	--

취업하려는 자는 취업 전에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임면 시 2가지 사항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p><b>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및 권익보호</b> 208p</p>	<p>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li>● (생략)</li> <li>●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할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료를 지원하거나 동 특약 가입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li> </ul> <p>*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보호자 등으로부터 영유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률상담 제공 및 고소 또는 고발 등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1인당 기소전 최대 300만원, 심급별 최대 500만원, 총 1,8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보장(아동학대로 판결 받은 경우 보상 제외)</p> <p>※ 문의 : 1600-0611(어린이집안전공제회)</p>
--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자체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료를 지원하거나 동 특약 가입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p><b>보육교직원 자격 취소</b> 217p</p>	<p>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p> <p>3) 청문의 실시 및 자격취소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 자격 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의 자격 취소 결정</li> </ul> <p>※ (생략)</p> <p>※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자격만 취소(단, 보육교사·원장 두 자격 모두 취득한 자가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 결정된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 취소)</p>
--	--

보육교직원의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자격만 취소되나, 보육교사·원장 두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제48조 제1항 3호에 따라 자격취소 결정된 경우에는 두 자격이 모두 취소됩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21p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 (생략) ~
- (생략)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
  -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며,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실시간 화상교육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283p

가. 지급절차 총괄

(박스 내용)

- 누리과정(3~5세반)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
- 매월 1일 24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시·도별 3~5세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 기준(원칙)으로 10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아동  
(다만, ① 1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인 경우는 익일 24시 기준 ② 3월은 연도전환, 반편성 등 고려 별도 안내)
- 행복이음 상 누리과정 보육료 자격(0~2세반 → 3~5세반)으로 직권변경 처리된 2세 아동(1/2~3/1일생)이 3세반으로 편성된 경우 포함
  - ※ 보육료 지원 자격(수급권자)이 없는 3~5세반 외국국적 장애아동의 누리장애아반 배치는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 직권으로만 가능(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장애아 보육료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을 첨부하여 공문발송 필수)하며, 보육료 지원은 불가함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 매월 1일 24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담임교사로 임용, 누리반으로 배정된 교사 중 누리과정 원격연수를 이수한 교사
  - 매월 1일 24시 기준 누리과정 원격연수를 미이수한 경우, 당월 내 이수 시 익월 소급 지급
  - 대상자 확정(매월 1일 24시) 또는 처우개선비 신청 이후 담임교사가 월 중 퇴사시에는 15일 이상 근무(날짜 기준)해야 지원 가능

누리과정 집합연수 미시행에 따라 원격연수만으로 처우개선비 및 누리운영비 지급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처우개선비, 운영지원비 지급기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400p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나)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야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모두 하원 시까지 반드시 근무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모두 하원한 경우에는 보육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교사 퇴근을 허용하여 유연한 근무 운영을 도모하게 됩니다.

**|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56p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기간 제한 없음 1~10일	수시 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긴급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5일 최대 10일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5일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보육교직원 연가 지원일수 기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직무교육 중, 승급교육과 원장사전직무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님에 따라 후순위로 조정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준이 추가 되었으며, 보육교사 퇴직으로 대체교사 지원 필요시 퇴직 후 2주 이내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수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57p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사업기간) '24년 1월 ~ '24년 12월
- (생략)
- (지원단가) 월 2,401천원, '24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2,061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li>● (생략)</li> </ul>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다.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

- 지원단가: 월 93,690원(8시간 기준)
-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기준
- (생략)
- (생략)
- (생략)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및 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겸임이 가능하며, 대체교사 근무 인건비 별도 지원 가능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나. 지원기간: '24년 3월 ~ '25년 2월**

다. (생략)

**라.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생략)
- (생략)
- 지원단가: 월 2,294천원(국공립 1호봉 수준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30%)
- \* (생략)
- (생략)
- ※ 비담임교사가 원감 역할(1급자격, 3년이상 경력)까지 수행하는 경우, 월 2,325천원(국공립 7호봉) 지급 가능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인건비는 어린이집 자부담)

2024년 기준을 적용하여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가 대체교사 겸임할 경우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근무 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62p

**가. 지원 기준**

1) 지원 대상

- 지자체에서는 아래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
- ① (생략)
- 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 전체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영아반을 포함하여 반 2개 이상, 영·유아반 정원충족률 5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 (영아반) 0세·1세·2세반, 혼합반(0·1세반), 혼합반(1·2세반), 시간제보육반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 지침이 명확화되었습니다. 유아반 2개 이하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영아를 포함한 반 2개이상, 영유아 정원충족률 50%이상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현행법 기준으로 안내드리며, 법률 개정 및 공포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 확대 및 사용 형태 변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1년 11월 19일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휴직 신청대상에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아직 출산하지 않은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4(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은 “1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2회”로 나누어 사용가능하게 하였습니다.(2020.12.8.개정) 그러나, 위 개정사항인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 사용한 부분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2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 신청(2021. 11. 19.~)**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 채용 시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2021. 8.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린이집에서 이력서 또는 기타 인사기록카드 등에 위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주52시간제 적용(상시근로자50명이상:2021.1.1.~ /상시근로자5인이상:2021.7.1.~)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1주간은 7일을 의미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절대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1주 8시간 추가근무가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정규정 신설(2021. 10. 14.~)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주요 내용

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상시근로자50명이상:2021.1.1.~ /상시근로자5인이상:2021.7.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시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꼭 기억해요 2

## ▶ 누리과정 연수 변경사항 안내('24~)

<p><b>육아종합지원 센터 사업</b> 498p</p>	<p>나. 영역별 수행사업</p> <p>1) 어린이집 지원사업</p> <p>나)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 삭제 &gt;</li> <li>• <u>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연수: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원격연수 운영</u></li> </ul>
-------------------------------------	--

2024년부터 누리과정 연수 간소화로 중앙e-러닝에서 원격연수를 운영합니다. 원격연수 이수만으로도 처우개선비 지원 및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부여가 가능합니다.

### ▶ 변경사항

- 누리과정 연수 간소화에 따른 **집합연수 미실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누리과정 원격연수· 집합연수 이수	누리과정 <b>원격연수*</b> 이수	누리과정 원격연수 이수 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지원 및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부여 가능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유아·놀이 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수강

### ▶ 행정사항

- (어린이집)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교사의 누리과정 원격연수 이수정보 입력
  - \* '24.1.1. 이전 원격연수 이수정보 기등록 보육교사는 재입력 불필요
- (시·군·구)
  - 어린이집에서 입력한 원격연수 이수정보를 [행정지원시스템]-[교육관리]-[누리과정]-[3~5세 원격연수 관리]<sup>(신설)</sup>에서 확정 처리\*
  - \* 확정처리된 보육교사는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이 됨
  - 이수정보 허위등록 방지를 위한 이수증 및 이수번호 확인 철저

**▶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부여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 기준(보육사업안내 202p)**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낮잠시간 등) 동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아래의 배치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담임교사 1인당 아동수를 예외 적용한 경우에도 가급적 성인 1인당 아동 수는 일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원장,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에 순환 근무하여 영유아를 관찰·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함(교사 대 아동비율 적용예시)

구분	교사 1인당 아동 수	
	일반기준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 예외
0세	3명	최대 6명
1세	5명	최대 10명
2세	7명	최대 14명
3세	15명	최대 30명
4세 이상	20명	최대 40명

**▶ 평가제 참여확인서 발급안내(2022.2.9.부터 적용)**

- ▶ 평가제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도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https://chrd.childcare.go.kr>)에 로그인
- \* 마이페이지 : 나의 현황(경력) > 참여확인서 발급 > 출력 가능
- \* 자격 & 교육 문의 : 1661-5666 (한국보육진흥원)
- \* 경력 & 급여 문의 : 관할 지자체, 어린이집
- \*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 : 1566-323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어린이집 평가 참여 확인서

**인식사항**

성 명	이
주민등록번호	9 *****

**평가 참여사항**

어린이집 명	(지점)	어린이집
주 소	대진광역시 유성구	
근 무 직 교	보육교사	
근 무 기 간	20 31. ~ 20 28.	
평 가 이 려	2013.신규인증 09기 (원장평가위 2014. 01. 06.)	
	2016.재인증 12기 (원장평가위 2017. 01. 03.)	

1) 본 확인서는 보육교직원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기간에 어린이집의 평가 및 원장평가 신청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결과에 기하한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가 아님  
 2) 본 확인서는 평가 참여 확인 의 다른 목적(보육교직원의 경력 증명 등)으로 사용될 수 없음  
 3) 평가이력은 원장평가위 이전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해 표기함

2022년 01월 12일  
 한국보육진흥원장

# 보육교직원 필수교육 3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필수·의무 교육을 안내드립니다. 교육구분에 따른 교육 대상을 확인하여 시기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 구분별 의무교육 안내

### 1) 보육교직원 의무교육(10종)

교육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	회기/교육시간	
1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	<b>모든 보육교직원</b> (기본,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담당교사과정 중 택1)	연1회 (약2시간)
2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등	<b>보육교직원</b> (주된 업무가 보육,교육, 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4시간 (이론2,실습2)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b>모든 보육교직원</b>	연1회 (1시간이상)
4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등		연1회 (1시간이상)
5	성폭력 예방교육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연1회 (1시간이상)
6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등		연1회 (1시간이상)
7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	결핵의 감염 및 발병원인에 대한 이해, 결핵치료의 중요성 등		연1회
8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등		연1회 (1시간)
9	등·하원 안전교육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등·하원 안전교육		연1회
10	고농도미세먼지·오존 대응교육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		연1회

## 2)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4종)

교육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	회기/교육시간
1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취급자	연1회 (1시간 이상)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 및 모든 직원	연1회 이상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	연1회 (1시간 이상)
4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연1회 이상

## 3) 대상자별(담당업무, 규모별) 의무교육(9종)

교육구분	교육내용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담당 보육교직원)
2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3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어린이집의 석면건축물관리인 (09.1.1.이전설치 어린이집)
4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선임된 소방관리자
5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관리자
6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7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8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상시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9	조리원, 영양사 위생교육	상시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해당교육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시설 유형이나 규모, 직급에 따른 교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보수교육 기관

교육기관		홈페이지 주소
주관사(가나다순)	운영사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주)이케이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a href="http://edu.kidkids.net">http://edu.kidkids.net</a>
삼성복지재단	(주)멀티캠퍼스	삼성e-보수교육캠퍼스 <a href="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a>
(사)에듀케어	(주)알파코	에듀케어아카데미 <a href="http://www.educareac.com">http://www.educareac.com</a>
안산대학교	(주)마이에듀 한국보육교육협회	마이에듀교사자람 <a href="http://jaram.ac">http://jaram.ac</a>
한국성서대학교	(주)중앙교육 (주)고려아카데미컨설팅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a href="https://www.childcare.ac">https://www.childcare.ac</a>

\* 교육 과정: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영어·장애아·방과후 보육과정)

※ 출처 : 2024년 보육사업안내p242



# VI

## 기타

1. 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
2. 대체교사지원사업 안내
3. 경기도 특색사업 안내
4. 주요 보육 통계

# 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

## Q1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할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은 크게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업
어린이집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어린이집 지원</b> - 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지원,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취약보육지원, 교재 교구의 제공 및 대여 등</li> <li>● <b>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b>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보수교육 실시 위탁), 보육교직원 상담 등</li> <li>● <b>보육정보제공</b> - 홈페이지 운영(보육교직원 구인 구직 정보 제공, 보육 및 양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건강 및 영양관리), 커뮤니티 지원, 보육관련 상담 등</li> </ul>
가정양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부모교육</b> - 부모교육(가정 내 양육환경 점검, 부모 양육태도 점검, 자녀권리존중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 발달 이해 교육, 양육 스트레스 관리 등), 부모 자녀 체험활동,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등</li> <li>● <b>양육서비스</b> - 부모상담,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지원, 도서 장난감 등 제공 및 대여,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발달검사, 양육관련 정보 제공 등</li> </ul>
지역 특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 특성화 사업</b> - 지자체 특성화 사업, 지자체 행사 및 사업, 공모사업,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 등</li> </ul>

※ 사업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p><b>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이해</b>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제작)</p>	 <p>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p>	
<p><b>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안내</b>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제작)</p>		
<p><b>대체교사 사업 안내</b>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제작)</p>		
<p><b>보육교직원 상담 티움 사업 안내</b>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제작)</p>		

Q2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북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명	연락처
경기도북부	031-876-5767
가평군	031-8078-8100
고양시	031-975-3314
구리시	031-566-2323
남양주시	031-528-4463
양주시	031-868-0200
의정부시	031-853-5006
파주시	031-954-4800
포천시	031-536-9632
연천군	031-833-6079

※ 2024년 내 동두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 예정

남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명	연락처	육아종합지원센터명	연락처
경기도	031-258-1485	안성시	031-676-2991
과천시	02-6925-2526	안양시	031-383-5170
광명시	02-899-0163	양평군	031-773-2331
광주시	031-765-6010	여주시	031-883-2019
군포시	031-393-0236	오산시	031-374-5563
김포시	031-985-1901	용인시	031-335-8690
부천시	032-322-8686	의왕시	031-455-1853
성남시	031-721-1640	이천시	031-634-9842
수원시	031-255-5682	평택시	031-692-7705
수원시동부	031-273-6690	하남시	031-796-6579
시흥시	031-431-5682	화성시	031-8059-1640
안산시	031-415-2271		

# 2

## 대체교사지원사업 안내

▶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등에 따른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담임교사 부재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 ▶ 지원내용

- 1)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을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토요일은 지원하지 않는다.
  - ※ 대체교사는 연가를 사용하거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함
  -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계시간을 준수해야 함

### 2)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 신청 (전월 1~10일)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미배치 대체교사가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긴급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있을 경우 긴급지원 가능)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 신청방법

- 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② 메뉴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 신청하기 → 보육교사 선택 → 휴가구분 → 어린이집안내서 작성 → 저장

지원시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신청시기	전년도 12월 (1~10일)	1월 (1~10일)	2월 (1~10일)	3월 (1~10일)	4월 (1~10일)	5월 (1~10일)	6월 (1~10일)	7월 (1~10일)	8월 (1~10일)	9월 (1~10일)	10월 (1~10일)	11월 (1~10일)

## ▶ 궁금해요

**Q1** 대체교사를 5일 지원 받은 어린이집에서 센터와 협의 없이 4일만 지원받고 대체교사에게 자체적으로 휴가를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 센터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안내하고, 이후 예정된 지원일수가 변경된 경우 배치 잔여기간에 타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나가거나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수업을 위한 준비 등을 실시한다.

**Q2**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 외 청소나 설거지, 원장님 개인적인 용무 등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해당반 및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소 등 해당반에 배정된 업무일 경우 가능하나 혼자만 하는 과도한 청소, 창고정리, 조리 업무, 원장님 개인적인 업무 등은 요구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Q3** 지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하원 시 차량 탑승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 사고 시 불분명한 책임소재, 영유아 인계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적절하지 못한 보호자에게 영유아를 인계할 우려 등으로 대체교사는 차량탑승이 불가함을 사전에 공지 및 안내를 통해 갈등상황을 사전에 방지한다.

**Q4** 급한 일로 휴무 또는 조퇴를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긴급한 상황이나, 대체교사의 집안 사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야 하므로 센터에 연락하여 대체교사 관리자에게 상황 보고 후 지원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Q5** 대체교사 지원 철회에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연차지원 교사가 휴가를 가지 않은 경우, 전염성 질환 등으로 대체교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사한 교사로 대체교사를 신청하였을 경우 등 이다.

※ 출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3). 대체교사OJT 안내자료.

## 경기도 특색사업 안내

# 3

<p>경기도 늘품숲</p>	<p>▶ 생활 체험공간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인성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 상: 경기도 내 2~5세 영유아 및 부모</li> <li>• 이용시간: [어린이집 단체] 월~금 10:00~12:00 [영유아 가정] 월~금 13:00~14:00 / 14:00~15:00</li> <li>• 이용방법: 경기도 늘품숲 홈페이지(www.kbcei.or.kr) 온라인 예약</li> </ul>
<p>영유아 체험형 (AR)버스</p>	<p>▶ 생활 체험 교구가 탑재된 버스가 경기도 내 소외지역으로 찾아가 인성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 상: 경기도 내 12개 시군지역 소재 어린이집 (가평, 광주,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파주, 포천, 하남)</li> <li>• 이용시간: 화~금요일, 10:30 ~ 15:00</li> <li>• 이용방법: 경기도 늘품숲 홈페이지(www.kbcei.or.kr) 온라인 예약</li> </ul>
<p>경기도 놀이지도사</p>	<p>▶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지도사를 배치하여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과 부모의 놀이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 상: 경기도 내 영유아 가정</li> <li>• 내 용: 놀이프로그램, 놀이코칭, 육아정보 제공 등</li> <li>• 이용시간·이용방법: 경기도 내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li> </ul> 
<p>경기도형 보육컨설팅</p>	<p>▶ 어린이집 평가제 및 재무회계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보육품질 향상을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 상: 경기도 내 어린이집</li> <li>• 내 용: 컨설팅(대면/비대면), 평가제 및 재무회계 관련 교육 등</li> <li>• 이용방법: 경기도 내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 (센터 미설치 지역인 동두천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원)</li> </ul>
<p>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p>	<p>▶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겪는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문제에 대해 도움을 제공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 상: 경기도 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 가정</li> <li>• 내 용: 어린이집 내의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선별 및 치료 연계</li> <li>• 이용방법: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li> </ul>

**아이사랑놀이터  
&  
아이러브맘카페**

▶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합니다.**

• 이용방법: 해당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시·군명 가나다순)

연번	시·군	시설명	전화
1	경기북부	아이사랑놀이터	031-876-1822
2	가평군	아이사랑도담놀이터	031-8078-8100
3	고양시	탄현위브더제니스 아이러브맘카페	031-913-6003
4		화정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러브맘카페	031-975-3314
5		관산동행정복지센터 아이러브맘카페	031-962-3316
6	과천시	부림아이러브맘카페	02-6959-2646
7		문원아이러브맘카페	02-6959-2645
8	광명시	너울가지놀이실(소하점)	02-899-0175
9		너울가지놀이실(광명점)	02-899-0177
10	광주시	쓱쓱자람터&나무누림터	031-765-6010
11	구리시	아이러브맘카페(인창점)	031-566-2323
12		갈매아이사랑놀이터	031-574-9393
13	군포시	아이사랑놀이터(수리점)	031-393-0237
14		아이사랑놀이터(가족센터점)	031-391-0231
15	김포시	아이사랑놀이터	031-985-1901
16	남양주시	호평 도르르놀이터	031-511-4463
17		별내 Book놀이터	031-528-4552
18		와부 아이꿈놀이터	031-521-4463
19	부천시	부천아이파크 아이러브맘카페	032-321-0224
20		상동 아이러브맘카페	032-323-5(6)222
21		범박휴먼시아 아이러브맘카페	032-343-6694
22		고강본동 아이러브맘카페	032-681-6694
23		심곡본동 아이러브맘카페	032-656-6694
24	성남시	센터본점아이사랑놀이터	031-756-1640
25		판교 아이사랑놀이터	031-8017-1640
26		양지 아이사랑놀이터	031-736-1640
27		중원 아이사랑놀이터	031-759-1640
28		분당구청 아이사랑놀이터	031-715-1640
29		삼평 아이사랑놀이터	031-8017-1650
30		수내 아이사랑놀이터	031-716-1670
31		금광 아이사랑놀이터	031-746-1640
32		태평 아이사랑놀이터	031-753-1640
33	위례 아이사랑놀이터	031-722-1670	
34	수원시	정자 아이사랑놀이터	031-255-5681, 031-241-5681
35		호매실 아이사랑놀이터	031-278-5175-6
36		SK아트리움 아이사랑놀이터	031-268-0989
37		파장동행정복지센터 아이사랑놀이터	031-246-1600~1
38		아이사랑놀이터권선휴점	031-233-8070~1

**아이사랑놀이터  
&  
아이러브맘카페**

연번	시·군	시설명	전화
39	수원시동부	영통 아이사랑놀이터	031-273-3325
40		행궁아해꿈누리 아이사랑놀이터	031-241-4903-4
41		수원시가죽여성회관 아이사랑놀이터	031-258-9856-7
42	시흥시	아이맘카페(은행점)	031-404-5683
43		아이맘카페(정왕점)	031-431-5680
44		아이맘카페(월곶점)	070-7725-5534
45	안산시	초지 아이사랑놀이터	031-415-2271~3
46		본오 아이사랑놀이터	031-415-2278
47	안성시	안성시 아이러브맘카페	031-678-6850
48	안양시	안양시 아이사랑놀이터	031-469-1240~1
49	양주시	아이사랑놀이터	031-868-0200
50	양평군	아이사랑놀이터(양서점)	031-775-2331
51		아이사랑놀이터(양평점)	031-771-8374
52		하늘놀이터	031-773-2331
53	여주시	아해누리실	031-883-2019
54		아이사랑놀이터(황학산)	031-884-2240
55	연천군	몽게몽게 희망놀이터	031-833-7111
56	오산시	아이사랑놀이터 1호점	031-373-6195
57		아이사랑놀이터 2호점	031-374-6195
58		아이사랑놀이터 3호점	031-375-1195
59		아이사랑놀이터 4호점	031-376-1195
60		놀이공간(나무처럼)	031-378-6635
61	용인시	영유아체험실(삼가점)	031-335-8690
62		영유아체험실(상현점)	031-217-1952
63	의왕시	자유놀이실(청계점)	031-345-2196
64		자유놀이실(부곡점)	031-345-2197
65		자유놀이실(오전점)	031-345-2195
66	의정부시	의정부아이사랑놀이터	031-837-5010
67		민락아이사랑놀이터	031-928-5892
68	이천시	아이랑카페 1호점(본점)	031-634-9842~4
69		아이랑카페 2호점(온천점)	031-637-9847-8
70	파주시	아이러브맘카페	031-953-2047
71	평택시	북부아이사랑놀이터	031-615-3967~9
72		남부아이사랑놀이터	031-8036-4976~8
73		서부아이사랑놀이터	031-682-7794
74		평성아이안심놀이터	031-650-2670
75	포천시	아이사랑놀이터(포천점)	031-533-9636
76		아이사랑놀이터(소흘점)	031-541-9966
77	하남시	아이꿈놀이터	031-796-6579
78	화성시	아이키움터 향남1호점	031-8059-9925
79		아이키움터 향남2호점	031-8059-5115
80		아이키움터 반송점	031-831-5684
81		아이키움터 남양점	031-356-8813
82		아이키움터 영천1호점	031-378-0073
83		아이키움터 영천2호점	031-372-3005
84		아이키움터 봉담점	031-297-2022

# 주요 보육 통계

# 4

### ▶ 영유아 현황

(단위: 명/ '23.12월말)

구 분		총 영유아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	유치원 이용 영유아수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 수
전국(%)		2,033,033(100)	1,011,813(49.8)	521,794(25.7)	499,426(24.6)
경기도	(%)	<b>608,742(100)</b>	<b>311,814(51.2)</b>	<b>144,693(23.8)</b>	<b>152,235(25.0)</b>
	전국대비 (%)	(29.9)	(30.8)	(27.7)	(30.5)
서울시(%)		318,405(100)	155,251(48.8)	62,880(19.7)	100,274(31.5)

※ 총 영유아수 : 주민등록통계 0~6세 / 어린이집 이용 유아수 : 교육통계 2023년 4월 기준

### ▶ 어린이집 유형별

(단위: 개소/ '23.12월말)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28,954	6,187(21.4)	1,206(4.2)	551(1.9)	8,886(30.7)	10,692(36.9)	124(0.4)	1,308(4.5)
경기도	(%)	<b>8,903(100)</b>	<b>1,463(16.4)</b>	<b>56(0.6)</b>	<b>84(0.9)</b>	<b>2,826(31.7)</b>	<b>4,107(46.1)</b>	<b>63(0.7)</b>	<b>304(3.4)</b>
	전국대비	(30.7)	(23.6)	(4.6)	(15.2)	(31.8)	(38.4)	(50.8)	(23.2)
서울시(%)		4,431(100)	1,836(41.4)	18(0.4)	75(1.7)	912(20.6)	1,258(28.4)	25(0.6)	307(6.9)

### ▶ 어린이집 정원

(단위: 명/ '23.12월말)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1,401,440(100)	359,817(25.7)	103,921(7.4)	39,011(2.8)	596,075(42.5)	201,026(14.3)	4,046(0.3)	97,544(7.0)
경기도	(%)	<b>411,580(100)</b>	<b>96,880(23.5)</b>	<b>4,673(1.1)</b>	<b>7,037(1.7)</b>	<b>199,648(48.5)</b>	<b>77,351(18.8)</b>	<b>1,995(0.5)</b>	<b>23,996(5.8)</b>
	전국대비	(29.4)	(26.9)	(4.5)	(18.0)	(33.5)	(38.5)	(49.3)	(24.6)
서울시(%)		211,248(100)	102,578(48.6)	1,389(0.7)	4,481(2.1)	57,564(27.2)	23,170(11.0)	762(0.4)	21,304(10.1)

## ▶ 어린이집 현원

(단위: 명/ '23.12월말)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1,011,813(100)	286,487(28.3)	56,812(5.6)	24,010(2.4)	420,219(41.5)	159,864(15.8)	2,851(0.3)	61,570(6.1)	
경기도	(%)	311,814(100)	80,091(25.7)	2,778(0.9)	4,502(1.4)	143,136(45.9)	64,553(20.7)	1,481(0.5)	15,273(4.9)
	전국대비	(30.8)	(28.0)	(4.9)	(18.8)	(34.1)	(40.4)	(51.9)	(24.8)
	정원 충족률	75.8%	82.7%	59.4%	64.0%	71.7%	83.5%	74.2%	63.6%
서울시	(%)	155,251(100)	79,939(51.5)	872(0.6)	3,003(1.9)	40,230(25.9)	18,576(12.0)	542(0.3)	12,089(7.8)
	정원 충족률	73.5%	77.9%	62.8%	67.0%	69.9%	80.2%	71.1%	56.7%

## ▶ 특수보육어린이집

(단위: 명/ '23.12월말)

구 분	계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방과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공공형	0세아
전국	12,458	308	173	1,464	146	7,309	126	271	2,325	335
경기도	3,565	37	20	546	4	1,887	30	54	651	335
전국대비(%)	(28.6)	(12.0)	(11.6)	(37.3)	(2.7)	(25.8)	(23.8)	(19.9)	(28.0)	(100)
서울시 (전국대비%)	2,539	30	8	423	45	1,958	21	54	-	-
	(20.4)	(9.7)	(4.6)	(28.9)	(30.8)	(26.8)	(16.7)	(19.9)		

## ▶ 보육교직원

(단위: 명/ '23.12월말)

구 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	기타
전국	302,799(100)	28,818(9.5)	226,134(74.7)	1,387(0.5)	941(0.3)	776(0.3)	27,523(9.1)	17,220(5.7)
경기도	90,193(100)	8,852(9.8)	68,095(75.5)	290(0.3)	322(0.4)	279(0.3)	9,650(10.7)	2,705(3.0)
전국대비(%)	(29.8)	(30.7)	(30.1)	(20.9)	(34.2)	(36.0)	(35.1)	(15.7)
서울시	49,783(100)	4,420(8.9)	37,063(74.4)	310(0.6)	145(0.3)	142(0.3)	3,549(7.1)	4,154(8.3)
전국대비(%)	(16.4)	(15.3)	(16.4)	(22.4)	(15.4)	(18.3)	(12.9)	(24.1)

※ 출처 : 경기도청(2024).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 참고문헌**

영유아보육법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한국보육진흥원(2024). 2024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경기도청(2024).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2024). 2024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3).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 안내

한국보육진흥원(2023). 어린이집 설치·운영 통합 매뉴얼

한국보육진흥원(2023).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관리를 위한 「자체점검체크리스트」안내

경기도 보육정책과(2021). 2021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운영매뉴얼(컨설턴트용)

총괄	정혜원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실무·편집	홍유림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팀장
	옥향희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보육컨설턴트
감수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장경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경기도와 보육 바로 알기

인쇄	2024년 2월
발행일	2024년 2월
발행인	정혜원
발행처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3층 ☎ 031-876-5767
디자인·인쇄	(주)디자인여백플러스 ☎ 02-2672-1535~6

※ 본 책자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